

201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세미나 자료집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의 인권 -

일시 | 2013년 2월 13일(수) 14:00-17:0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¹⁾

-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의 인권 -

사회: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김지연(사회자)
14:10~14:20	환영인사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4:20~15:20	주제발표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0~16:40	지정토론	남미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6:40~16:55	종합토론	
16:55~17:00	폐회	김지연(사회자)

1) 이 세미나는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동연구사업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원고는 위 연구와 관련하여 현재 집필 과정에 있으므로 인용을 포함한 일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발 표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의 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청소년의 임신이나 출산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임신이나 출산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하고 당당한 일일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식에 따르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인권의 출발점은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권이고, 이러한 자유권은 이 권리의 동등한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에 의해서 보완되며, 자유의 경제적 기초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에 의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경험에 있는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분류하면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인권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권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이다. 다시 말해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청소년은 성인이 향유하는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²⁾ 같은 맥락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도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 청소년의 보호, 특히 청소년의 성(性)과 건강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청소년의 인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피하다.³⁾ 그러나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2)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보장된 인권은 대부분 성인이 향유하는 인권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동권리협약도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4조: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a)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activity; (b)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ctices; (c)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II.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1.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1) 내용과 주체

여성은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임신·출산 여부, 임신의 지속·중단에 관한 선택, 임신·출산의 횟수, 임신·출산 간의 기간 조절(터울조절) 등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모성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도출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모성은 다름 아닌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할 수 있는 특성, 즉 임신·출산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⁴⁾ 물론 헌법의 체계상 모성에 관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헌법 제31조에서 제36조의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교육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1조 제1항)이나 근로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2조 제1항)의 경우에도 교육에 관한 자유권과 근로에 관한 자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모성에 관한 기본권도 모성에 관한 자유권으로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모성에 관한 기본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한하여 이해해야 한다면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헌법 제37조 제1항)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여성에게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임신·출산에 관한 적극적 결정권

우선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측면’에 따라 청소년인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임신할

4) 헌법재판소는 모성에 관한 기본권에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면 이하, 790면: “특히 여성과 장애인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함을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외에도, 위에서 본 헌법 제32조 제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3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 있고, 임신을 지속하여 출산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금지하거나 본인이 원하여 임신한 여성 청소년에게 임신의 중단(낙태)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임신한 청소년에게 부모나 교사가 낙태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임신·출산에 관한 적극적 결정권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임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인 여성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도 자퇴를 강요당하거나 강제로 퇴학당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사유임을 의미한다.⁵⁾ 물론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하므로 미성년인 자녀가 출산한 경우에 아이에 대한 친권은 그 부모가 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민법 제910조)⁶⁾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미성년인 자녀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통해 법적으로도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허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임신·출산에 관한 소극적 결정권

또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에 따라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신하지 않을 수 있고, 비록 본인이 원하여 임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5)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한 여학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사건에서 이것은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권위 2009. 7. 6. 09진차535결정: “①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써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임.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학업중단(낮은 교육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음.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신한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임신사실이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청소년 임신 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님. 하지만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할 수 없음.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6) 민법 제910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孫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수 있다. 이것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 청소년에게 임신을 강요할 수 없고, 여성 청소년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을 강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신의 중단, 즉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현행 형법상 낙태는 금지되고 처벌되어 범죄로 취급되고 있고,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⁷⁾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는 낙태가 정당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임신이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청소년의 임신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⁸⁾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됨으로써 임신한 청소년의 낙태가 가능해지면 임신·출산에 관한 소극적 결정권은 강화될 수 있다.

낙태를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낙태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의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도 의사가 낙태수술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하지만 본인의 동의와 함께 ‘배우자의 동의’도 함께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속한다는 사실과 충돌할 수 있다. 어쨌든 모자보건법은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낙태의 결정에서

7)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정당화되는 사유로는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8)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낙태가 정당화되는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2012. 8. 23. 2010헌바402: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모자보건법에서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만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동법 제14조 제3항)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 경제적, 사회적 사유에 따른 낙태가 허용되어 청소년의 낙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는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은 출산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출산한 자녀의 양육 여부나 양육의 방법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양육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시키거나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민법이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의 입양은 가능하지만 형법에 따라 자녀의 유기는 처벌받는다.⁹⁾ 여기서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출산한 자녀를 불법적으로 유기하여 유기된 아동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아의 유기가 합법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¹⁰⁾ 합법적 영아유기는 일정한 안전장비가 갖춰진 시설에 영아를 유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를 유기한 여성의 신원비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유기된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여성에게 자녀의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영아를 유기한 여성에게 도덕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기된 아동은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받는 대신에 평생 동안 자신을 낳아준 부모나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쨌든 이 제도는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인 낙태권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청소년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를 불법적으로 유기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기된 아동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나 아동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 청소년의 궁박한 처지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9)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72조).

10) 영아유기의 합법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준일, 영아유기의 합법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제40호(2011), 337면 이하 참조.

Ⅲ.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차별금지사유로서 임신과 출산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1항). 물론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는 ‘성별’과 ‘종교’ 및 ‘사회적 신분’으로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사유는 이런 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은 헌법상 금지된 (열거되지 않은) 차별사유로 보아야 한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차별금지사유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성차별)로 볼 수도 있다.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19가지 차별금지사유¹¹⁾ 가운데 하나로 임신 또는 출산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그밖에도 여성발전기본법,¹²⁾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약칭)¹³⁾ 등에서도 임신이나 출산은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물론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행위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이나 법률에 비추어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으로는 고용, 거래, 교육 등의 영역이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차별의 의미를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11)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이 있다.

12)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문: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이에 따라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 청소년을 고용, 거래, 교육 등의 영역에서 배제 또는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특히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2. 차별금지사유로서 나이와 혼인 여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임신하거나 출산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기보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임신하거나 출산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일 수 있다. 여성이면 누구나 임신할 수 있지만 청소년인 여성의 임신은 도덕적으로 금기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나이(연령)’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이해될 수 있다. 나이 어린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차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청소년에게 도덕적으로 금지된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은 성행위의 여부와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¹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령 이하인 여성과의 성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기는 하지만¹⁵⁾ 모든 여성 청소년과의 성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청소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에 대체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혼인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차별, 즉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일 수 있다. 이처럼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본질적으로 나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14)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유사하다.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등, 판례집 14-2, 390면 이하, 397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15) 형법은 13세 미만의 부녀와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같이 처벌한다(형법 제305조).

사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된다. 따라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하여 나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행위는 정당화되는데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하여 나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청소년은 모성보호조치나 적극적 우대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V. 임신 · 출산과 관련된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수급권의 대상으로서 임신 · 출산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으로 생계, 교육, 주거, 보건(의료), 모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모성, 즉 임신 · 출산은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자유권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제공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¹⁶⁾ 모성에 한정해서 본다면 모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 제공해주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모성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이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성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신과 출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고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¹⁷⁾ 따라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신 · 출산에 관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측면에서는 성인인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과 다른 점은 없다. 만약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배제한다면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것은 나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16)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준일,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2004), 453면 이하 참조.

1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 검사, 2.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 ·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2.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임신이나 출산은 양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검토되어야 한다.¹⁸⁾ 특히 청소년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 해당 청소년이 상대방인 남성 또는 심지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홀로 생계를 꾸리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계나 양육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인 청소년(24세 이하)이 보호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¹⁹⁾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과 같은 복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그밖에도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게는 복지자금 대여(동법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우선고용(동법 제14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시설에 대한 우선적 허가(동법 제15조), 공공시설의 우선적 이용(동법 제16조), 가족지원서비스(동법 제17조), 국민주택의 분양이나 임대 시 우선권 부여(동법 제18조)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대부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행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거나 한부모가족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게 이행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생계에 관한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학생인 여성 청소년의 임신·출산의 경우

학생인 여성 청소년이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이 임신이나 출산한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임신이나 출산한 여학생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신이나 출산한 여학생을 위한 특수한 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하여

18) 헌법재판소도 양육권에 포함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2008. 10. 30. 2005헌마1156, 판례집 20-2상, 1007면 이하, 1018면: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1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5조 제1항), 여성가족부령인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시행규칙 제3조).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지원에는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③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④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²⁰⁾이 포함된다(동법 제17조의2 제1항). 이와 같은 교육지원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IV. 결론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이 향유해야 하는 인권은 임신이나 출산이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인권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인권목록에 포함된다면 이러한 인권목록에 포함된 인권들은 모두 여성 청소년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로 옮겨간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청소년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여성 청소년도 주체가 된다. 대표적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에 관한 사회보장수급권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이 반드시 향유해야 할 인권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권목록이 여성 청소년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권목록의 관점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에 관한 입법이 평가(통제)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청소년의 낙태권을 제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모든 영아유기를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여성 청소년의 임신·출산에 관한 사회보장수급권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0)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에서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동시행규칙 제9조의2).

지정토론

남 미 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임신·출산을 여자청소년이 아닌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악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분리해서 제시하기보다는 남자청소년도 포함한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 이유로는 첫째, 임신·출산은 특성 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간의 문제라는 점, 둘째,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청소년미혼모만큼이나 남자청소년미혼부의 경우에도 열악하다는 점, 셋째, 여자청소년만 다루게 되면 자칫 여성은 영원한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미쳐질 수 있다는 점, 넷째,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국한함으로써 청소년권리나 인권의 문제보다는 시혜적 차원이나 보호적 차원에서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다섯째, 임신 및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여자청소년의 책임을 강조하고 남자청소년의 책임이나 참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현재 청소년부모들의 당면문제는 성적 차별에 따른 부분보다는 연령별 차별에 따른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

2. 청소년기 재생산(임신·출산·양육)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역사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임신·출산이 금기시된 것은 얼마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음. 국가에 따라 청소년의 임신·출산에 대한 시각은 다소 상이하며 이런 관점을 청소년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됨.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행동 자체를 문제로 보는 반면 북유럽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반면 임신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행동 및 임신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서도 잔여적, 소극적 접근을 하고 있음. 연구자는 청소년기 재생산문제를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도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와 타당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기 재생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 및 관점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함.

또 연구자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자기결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청소년들의 임신이 문제가 되는 측면에서는 한창 공부해야 하는 학령기에 학생이 아닌 부모됨의 선택은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도 크다. 그러나 학령기를 학생신분으로 지낸 청소년들도 취업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더 증가하여 또 다른 사회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순서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기 어렵다. 일부 청소년 중에는 먼저 부모가 되고 뒤에 성공적으로 자기발전을 하는 청소년도 있다. 따라서 삶의 방식을 하나로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고 사회가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언제 임신과 출산을 하며 언제 부모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연속성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은 과연 위험한 일인가?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미혼부모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미혼부모들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 사회적 장애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함.

3.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다루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10대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개방적 입장도 제기되는 등 상이한 견해들이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복지가 앞서가는 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수용도 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해 보수적, 금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많고 청소년의 성행동은 비행행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음. 따라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제해야 함.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아정체감의 근간이 되는 정체체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판단능력을 가진 자에 한한다고 하였음.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함. 그러나 청소년 중에서도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는 점, 성인이라고 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연령만을 가지고 자기결정권 부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사람들은 만족하고 안정된 성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재생산 능력은 물론 언제, 얼마나, 자주 할지를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4.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은 성 건강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함.

우리나라도 이미 가입한 1990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재생산과 관련된 보호를 포함하여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제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제적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도 재생산 관련 보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자신들의 성행동을 이해하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남녀에게 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출산을 위한 선택방법은 물론 가족계획과 관련된 모든 선택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듯이,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듯이 청소년도 이 부분은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재생산 관련 보호는 성 건강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임신이 되기 전부터 성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적합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청소년미혼부모의 생존, 성장, 발달권 보장

청소년미혼부모는 부모인 동시에 청소년이기도 하다. 모든 청소년들이 의식주를 제공받고 적절한 영양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듯이 청소년미혼부모에게도 생존, 성장, 발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미혼부모에게는 부모의 권리와 더불어 청소년의 권리가 동시에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 중에 있으므로 부모가 된다고 해도 적절한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 적합한 지원이 필요함.

6. 사회보장적 접근에 있어

- 1)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임.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최대한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 특히 보호권 및 복지권이 강조되어야 하며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등이 통합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2) 가족중심의 지원에서 개인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가출, 성매매, 비행, 임신들의 문제와 관련된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은 청소년미혼부모를 둔 가족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3) 차별금지 중에서도 연령차별과 관련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미혼부모들은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이중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성보호조치나 적극적 우대조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 4) 현재 임신과 출산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보장수급권의 측면에서는 성인인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과 다른 점이 없다고 제시함. 이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 부합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의 경우 경제력이 없고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현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성인 중심의 틀에서 성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맞게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조정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함. 예를 들어 연구자가 제시한 주거지원, 소득지원, 의료지원 등의 경우는 일부 청소년들만이 혜택을 받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법에서 명시한 규정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될 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규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연구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외에도 수급자격의 엄격성, 서비스 내용의 빈약,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서비스 기간, 성급한 취업 강조 등 꼼꼼히 점검해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특히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강조는 상대적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며 청소년부모를 음성화하고 급기야는 한부모화하도록 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한부모가 강조되기 보다는 가족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5) 학생인 청소년부모의 경우에는 학적 유지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의 자격기준은 주로 일반학생들의 학령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수는 크지 못함. 따라서 청소년부모의 교육수혜 기간을 특정 연령으로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평생교육관련 혜택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6) 일시적이든 장기간 이든 청소년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상당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일을 하고 싶어도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의 수준은 아르바이트 수준이 되어 빈곤문제와 바로 직결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보육서비스 혜택도 매일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해야 하며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기 위해 지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저런 이유로 취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주거지원도 여러 가지 지원자격의 제한으로 청소년부모가 주거지원을 받기 어렵고 설사 받는다고 해도 수도값, 전기세, 분유비 등으로 방세를 내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여가와 문화생활, 사회참여와는 단절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혼모의 경우 비공식자원(예,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향이 많아 일가족양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유예기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부모에게만 유독 혹독하게 일과 양육, 학업을 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혹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청소년부모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지정토론문〉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父 또는 母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이른바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12,84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0). 이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0.07% 수준으로, 절대적인 비중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더구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그 특성 상 이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한부모 가정은 공식적인 통계에 포착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같은 연유로 정책 당국에서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계제에 한부모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본 토대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청소년 한부모 문제를 기본권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단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본권·인권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기본권·인권 보장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보다 체계적이며 견고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되는데 있어 오늘 세미나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발표자께서 발표해주신 원고의 내용이 귀중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방대한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해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인권 관련 법제 분석을 위한 프레임 관련

청소년 한부모의 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생활의 쏠 영역에 걸쳐 제기될 수 있는 바, 그 범위가 무척 방대하다. 따라서 추후 관련 내용을 분석할 때는 발표자께서 몇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그 틀에 맞추어 분석하신 것처럼, 분명한 분석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면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청소년 한부모’와 상응하는 정책대상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인권과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이라는 특징과 ‘한부모’라는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바, 이와 상응하는 집단으로는 i) 성인 한부모와 ii) 일반 청소년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 성인 한부모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인권 대비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 보장 내용, ii) (일반) 청소년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인권 대비 청소년 ‘한부모’들이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 내용을 대비시켜 정리하게 되면, 독자들이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이 같은 매칭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의 사각지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본권·인권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틀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보장되지만 청소년 한부모들이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기본권·인권 분석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예: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등)에서 제시된 영역별 지표를 준거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직하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를 준거로 적용해보았을 때, 청소년 한부모들이 제도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작업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보다 중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권 가운데 특히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령기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학습권 보장은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이때 학습권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근로보장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이들의 삶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대두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검토를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기타

-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해 기본권·인권 차원에서 검토된 내용과 이 과정에서 도출된 논리는 광범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확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말미에서는 이에 관한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가능하다면 이 연구를 통해 검토된 기본권·인권 관련 법제의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의 방향까지 제시될 수 있다면 추후 입법화 되는 데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복지 선진국가들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이나 관련 법령 가운데, 기본권·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연구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거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는 사회심리적 관점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여러 가지 조건 상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약자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사회심리학적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 실제로는 이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누락된 기본권·인권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할 때는 이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실행계획서.

MEMO

MEMO

201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세미나 자료집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의 인권 -

인 쇄 2013년 2월 8일

발 행 2013년 2월 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 문 사 02) 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